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, 홀덤펍, 식당·카페,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26일

서울특별시

1. 집합금지 조치

- 기 간 : 2021년 7월 26일(월) 0시 ~ 2021년 8월 8일(일) 24시, 2주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, 홀덤펍
- 조치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
 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2. 집합제한(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조치

- 기 간 : 2021년 7월 26일(월) 0시 ~ 2021년 8월 8일(일) 24시, 2주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) 및 돌잔치전문점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(시설별 방역수칙¹⁾ 준수의무화) 조치

※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7.26.(월) 0시부터 8.8.(일)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

1)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

○ 위반 시 조치사항

-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
-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-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-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○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

-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

*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① 집단감염(10인 이상) 발생 시 ②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

* 집합금지 기간 : 1주일

3. 영업형태 정의

○ 홀덤편

- 「식품위생법」에 의거 일반·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편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·음료·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

○ 돌잔치전문점

-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·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「식품위생법」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,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, 호텔, 예식장,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

4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
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 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3조
 -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
 - (제1항)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

※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「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」에 따름
 ※ 사적모임,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「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」에 따름

5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7월 26일(월) 0시부터

6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8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. 끝.

붙임

시설별 방역수칙 (4단계)

1] 식당·카페 (일반·휴게음식점 및 제과점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***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	■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***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
	④ 마스크 착용 ■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	⑤ 손씻기 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	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	⑦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■ 창문, 출입문 상시 개방(권고) -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-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 출입문 개방 환풍기 가동 -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■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(권고) -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	
	⑧ 소독하기 ■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 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	추가수칙	① 이용시간 제한 ■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
② 춤추기, 음악소리, 테이블 이동 금지 ■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■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■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		■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■테이블 간 이동 금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추가 수칙	③ 공용집게 사용 등 ■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)
	④ 코로나 선제검사	
	■ 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영업주 및 종사자 선제검사(의무)	■ 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이용자 선제검사(권고)
	⑤ 기타	
	■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 ■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안내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· 공연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(이동설치 불가) · 공연자 마스크 착용 ·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1인 공연 즉시 마이크 캡 교체 · 노래 부르기 등 공연간 시간격 유지 (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) </div>	■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이용 ■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· 공연자 마스크 착용 ·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노래 부르기 등 공연간 시간격 유지 (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) </div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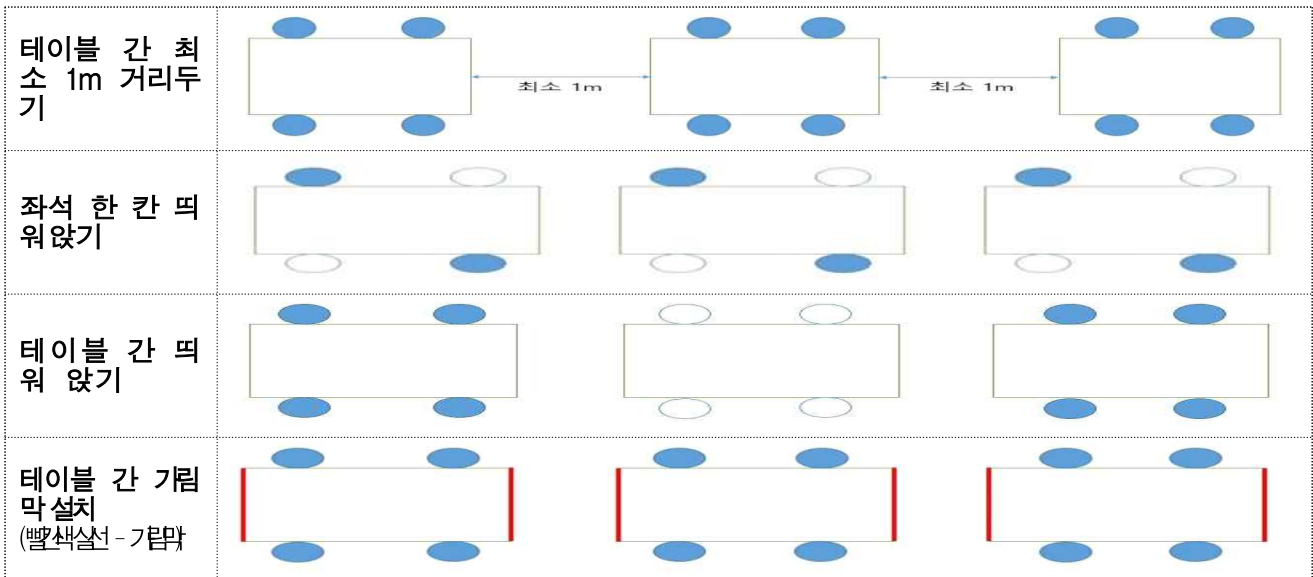
② 돌잔치전문점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* 식사, 기념촬영(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) 시에만 잠시 미착용 허용(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)	■ 행사주관 부모 포함 모든 참석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* 식사, 기념촬영(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) 시에만 잠시 미착용(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)
	④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⑤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 유지 안내	■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(권고)
	⑥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■ 창문, 출입문 상시 개방(권고) -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-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 출입문 개방 환풍기 가동 -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■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(권고) -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	
	⑦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	추가 수칙	① 식사 시 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■ 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안내 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후 이용자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, 음식 담기 위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■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
② 만남 시 ■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 ■ 지인 간 신체 접촉(약수 등) 자제 안내		■ 대화 시 마스크 착용 ■ 지인 간 신체 접촉(약수 등) 자제
③ 시설 내 공용공간 ■ 흡연실, 화장실, 휴게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	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④ 코로나 선제검사 ■ 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영업주 및 종사자 선제검사(의무)		■ 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이용자 선제검사(권고)

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 대화 금지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손소독제 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▲ 대화 자제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▲ 대화 자제
탕비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 창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< 좌석 도식도(예) >



※ 테이블은 몇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